

의안번호	2126595
의 퇴 인	권인숙의원
회 답 일	2024. 4.4
추계번호	23D03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지원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1년간 총 83억 6,000만원(단년도 소요)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제6조제4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9조(수사기관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1,879
	운영비	5,213
	시설비	1,268
	합계	8,36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4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4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3항)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수사기관 등)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3조(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함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함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의 퇴직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2	안 제6조제4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4	안 제9조(수사기간 등)	○	
5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	
6	안 제13조(보수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나뉘고, 운영규모가 수사기간과 기소 후 공소유지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추계
- 특별검사 등의 운영비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라 함)에 따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
 - 제정안의 경우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처우 및 활동기간 등이 아래의 표와 같이 유사함

[표 2] 제정안과 고 이예람중사 특검법 비교

구 분	제정안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특별검사 등의 대우 및 보수 수준	특별검사: 고등검사장 수준 특별검사보: 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 3급~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수준	좌동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인원	특별검사보: 최대 4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	좌동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파견검사: 최대 20명 파견공무원: 최대 40명	파견검사: 최대 10명 파견공무원: 최대 30명
수사기간	120일 이내	좌동
공소유지기간	7개월 이내	12개월

-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수사기간은 4개월, 2022년 공소유지기간은 2.5개월이고, 2024년 4월 현재 제2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특별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중임
- 수사기간에 특별검사보는 4명,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이 40명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보는 4명, 특별수사관은 3급부터 5급 사이의 특별수사관을 최대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임명될 특별검사보의 수와 수사관의 직급 및 수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특별검사보 4명과 3급 수사관 40명이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함

□ 파견인원은 최대인원인 60명으로 가정

- 제정안은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는 20명 이내, 공무원원은 4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인원인 검사 20명, 공무원 40명을 파견한다고 가정하고 추계
-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경비 등에 대한 단가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경비집행내역¹⁾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²⁾을 반영하여 산정함

- 특별검사의 퇴직시까지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수사기간은 4개월(2022. 5. 16.~ 2022. 9. 12.)이고, 2024년 4월 현재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운영비와 시설비는 2022년 수사기간(4개월) 및 공소유지기간(2.5개월, 2022. 9. 13~ 2022. 12. 31.)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여 추계

1)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 2022년

(단위: 백만원)

	수사기간(2022. 5. 16.~ 2022. 9. 12.)			공소유지기간 (2022년 집행액 기준) (2022. 9. 13. ~ 2022.12.31.)		
	월 소요 비용(A)	기간 (개월,B)	소요 비용(C)(=A×B)	월 소요 비용(A)	기간 (개월,B)	소요 비용(C)(=A×B)
인건비	76	4	306	76	2.5	191
직무활동 운영비 ¹⁾	445	4	1,779	50	2.5	124
시설비 ²⁾	407	—	407	150	—	150
합계	—	—	2,492	—	—	465

주: 1) 직무활동 운영비 인원 기준은 수사기간의 경우 42명(특별검사 1명, 검사보 3명, 수사관 6명, 파견인력 32명)이고, 공소유지기간의 경우 12명(특별검사 1명, 검사보 3명, 수사관 6명, 파견인력 2명)임

2) 시설비는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등

3) 공소유지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요된 경비만을 집계하여 공소유지기간 경비 집행내역을 산정함

자료: 법무부

2) 소비자물가상승률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6%	2.2%	2.2%	2.1%	2.1%

- 수사기간은 120일, 공소유지기간은 7개월로 가정
 - 현 시점에서 실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은 각각 최장 기간(120일, 7개월)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공소유지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의 인원과 동일한 12명으로 가정
 -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공소유지기간 동안 12명(특별검사 1명, 검사보 3명, 수사관 6명, 파견인력 2명)의 인원인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 서도 공소유지기간의 인원을 12명으로 가정함
- 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단년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수사기간(120일) 및 공소유지기간(7개월)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지급된 2022년 기준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임금상승률³⁾을 반영하여 추계

[표 3]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지급 보수 및 인원(2022년 기준)

(단위: 원)

직급	월 평균 보수
특별검사	10,442,000
특별검사보	9,495,000
특별수사관(3급)	6,244,000

자료: 법무부

3) 공무원임금상승률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공무원임금상승률	1.7%	2.5%	1.9%	2.1%	2.0%	2.0%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한 월 보수에 2025년 수사기간(120일) 및 공소유지기간(7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수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 추정: 2025년

구분	1인당 월 보수 (A, 백만원)	인원(B, 명)	기간(C, 개월)	재정소요(D) (=A×B×C, 백만원)
특별검사	11.3	1	4	45.2
특별검사보	10.3	4	4	164.8
특별수사관(3급)	6.8	40	4	1,088.0
합계	—	45	—	1,298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 추정: 2025년

구분	1인당 월 보수 (A, 백만원)	인원(B, 명)	기간(C, 개월)	재정소요(D) (=A×B×C, 백만원)
특별검사	11.3	1	7	79.1
특별검사보	10.3	3	7	216.3
특별수사관(3급)	6.8	6	7	285.6
합계	—	10	—	581.0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은 18억 7,900만원으로 추계

[표 6]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소요되는 인건비 추정: 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수사기간	공소유지기간	합계
인건비	1298.0	581.0	1,879

나. 운영비

- 특별검사 등의 운영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소요된 운영비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수사기간 운영비는 총 48억 3,600만원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4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명당 단가(각주

1)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한 월평균 직무활동 운영비는 12억 900만원, 4개월을 적용한 수사기간 직무활동 운영비(2025년) 총액은 48억 3,600만원

□ 공소유지기간 운영비는 총 3억 7,700만원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2022년 공소유지기간(2.5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명당 단가(각주1)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동안의 활동인원 수를 적용한 월평균 직무활동 운영비는 5,388만원, 7개월을 적용한 공소유지기간 직무활동 운영비(2025년) 총액은 3억 7,700만원임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 총합은 52억 1,300만원

[표 7]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2025년

(단위: 월, 명, 백만원)

구분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B, 명)	기간(C, 월)	재정소요(C) (=A×B×C, 백만원)
운영비	수사기간	11.5	105	4	4,836
	공소유지기간	4.5	12	7	377
합계		-	-	-	5,213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시설비

□ 시설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소요된 시설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수사기간 시설비는 총 11억 500만원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4개월)에 사용한 사무실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위해 집행된 시설비(각주1)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한 2025년 수사기간 시설비는 11억 500만원임

□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총 1억 8,900만원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소유지기간(2.5개월)에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리

모델링 등의 공사를 위해 집행된 시설비(각주1)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한 2025년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1억 6,300만원임

□ 시설비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12억 6,800만원으로 추정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 202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B, 명)	재정소요(C) (=A×B, 백만원)
시설비	수사기간	10.5	105	1105
	공소유지기간	13.6	12	163
합계		—	—	1,268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5년 초로 가정하여 2025년 내에 수사와 공소기간이 종료된다고 가정하였고,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원을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 인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